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93 발의연월일: 2024. 8. 6.

발 의 자:소병훈・이수진・정성호

문정복 · 안태준 · 이기헌

이병진 · 문진석 · 서영석

전진숙 · 전종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는 1,991만 명(국민 2.56명당 1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 처방 건은 1억 340건, 처방량은 18억 9411개에 달함. 더불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10대는 1,066 명으로 2022년 294명에 비해 262%로 증가했음.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오남용 우려' 여부는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알 수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고의적으로 투약 내역 확인을 건너뛸 수 있음. 이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도 적합하지 않음.

이에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엔 환자의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자 함. 청소년 및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 중독, 마약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3항 단서 중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 3.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②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및 통합정보센터 의 장에게 투약내역의 제공을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 해당하는----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2.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 <신 설> 지 아니하고 처방전을 발급하 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